#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진종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185

발의연월일: 2024. 8. 26.

발 의 자:진종오·김 건·서천호

김용태 • 박정하 • 서명옥

김승수 · 정성국 · 이달희

정동만 · 김장겸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 ·폭력정보 등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 개발 및 보급, 교육 및 홍보 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,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.

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 대상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, 특히 딥웹과 다크웹 등 가입자 확인과 IP 추적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관련 증거의 확보 및 범인 체포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의 예방 및 사전 차단 노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.

따라서 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를 보다 철저하게 예방하기 위해서

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,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청소년대상 범죄 예방 및 감시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에 청소년 대상 범죄의 예방 및 감시를 포함하도록 하고, 청소년 보호 책임자에게 청소년 대상 범죄의 예방 및 감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일정책임을 부과하려는 것임(안 제41조제1항, 제42조의3제3항 및 제76조제3항제3호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음란·폭력정보"를 "음란·폭력정보 및 청소년 대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"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예방 및 감시 제42조의3제3항 중 "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·관리하고,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등"을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1.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계획의 수립
  - 2.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제한 및 관리조치
  - 3. 청소년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
  - 4.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정보통신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
  - 5.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제76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제4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업무를 하지 아니하거 나 게을리 한자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41조(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 제41조(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 의 마련 등) ① -----의 마련 등) ① 방송통신위원 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 통되는 음란 · 폭력정보 등 청 ----음란·폭력정보 및 청소 소년에게 해로운 정보(이하 년 대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"청소년유해정보"라 한다)로부 정보-----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 야 하다. 1. ~ 3. (생략)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 <신 설> 죄의 예방 및 감시 4. (생략) 5. (현행 제4호와 같음)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제42조의3(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제42조의3(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) ①・② (생 략) 지정 등) ① • ② (현행과 같음) ③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정보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 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를 차 단 · 관리하고, 청소년유해정보 로부터의 청소년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소년 보호업무 를 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④ (생략)

제76조(과태료) ①・② (생 략)
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~ 3. (생략)

<신 설>

4. ~ 25. (생략)

④ (생략)

- 1.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계획의 수립
- 2.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제한 및 관리조치
- 3. 청소년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상담 및 고충처리
- 4.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 소년보호를 위한 정보통신업 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
- 5.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④ (현행과 같음)
- 제76조(과태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  - (3) -----

\_\_\_\_\_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 3의2. 제42조의3제3항을 위반하

여 청소년 보호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

- 4. ~ 25. (현행과 같음)
- ④ (현행과 같음)